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1373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9.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95,169,2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169,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사 김보라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1) B은 공동소유자인 C과 2018. 9.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D단지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소외 F에게 9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관할 용인세무서장은 [표1]과 같이 고지하였습니다.

2) B은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소 제기일 현재 구체적인 국세 체납내역(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 전산조회 참조)

<표1> B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2021. 10. 18.현재)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양도소득세	2018	2018. 9. 30.	2020. 2. 28.	81,096,150	95,169,250
합 계				81,096,150	95,169,250

나. B의 각 부동산의 처분 및 현금중여 경위

1) B과 공동소유자 C은 2018. 8. 23.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소외 F에게 9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¹⁾하고, F은 B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23. 90,000,000원, 잔금 2018. 9. 20. 269,368,302원을 송금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담보로 H은행 마들역지점에서 430,000,000원 대출을 받아 수표(₩ 1장, 300,000,000원, #J 1장 50,000,000원, #K~L, 7장 전체 70,000,000원, #

1) B과 C은 형제지간이며,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 공동매도인 B은 개인사정으로 계약시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접 전화통화 후 N(관계 : 누이, 피고 A의 배우자)이 위임받아 계약 체결함.

O~P, 10장, 전체10,000,000원)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양도부동산) 1부, 갑 제2호증 2 부동산취득확인서(이 사건 양도부동산) 참조)

- 매수인 F이 2018. 9. 20. 발행한 H은행 마들역지점 수표 중 수표번호 #K, #Q~R 총 3매 3천만원은 2019. 1. 22. H은행 A명의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체납추적과-S) 및 회신 참조)

2) 이 사건 양도부동산 처분 이후 B은 본인의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T 내 토지 및 다가구주택2(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며, 이하 'T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18. 10. 29. 소외 U의 2명과 9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1. 30. 소유권을 이전시켜주었습니다.(갑 제3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T부동산) 각 1부 참조)

3) B은 T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본인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0. 27. 5,000,000원, 2018. 10. 29. 85,000,000원, 2018. 11. 30. 26,104,234원(임차보증금 및 V 조합 근저당상환 제외) 송금받았습니다.(갑 제3호증 2 부동산취득확인서(T부동산) 1부 참조)

4) B은 본인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8. 10. 29. 100,000,000원의 수표(#W-X, 액면가 10,000,000원, 10장)를 발행하였고, 동일 은행 계좌에서 2018. 11. 30. 100,000,000원(#Y, 100,000,000원, 1장)의 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G은행 계좌 내역(계좌번호 1 생략) 갑 제5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체납추적과-Z) 및 회신 각 1부 참조)

- 그 중 G은행에서 2018. 10. 29. 발행된 수표(#W 1장 10,000,000원, #AA-X 7장 합계 70,000,000원) 총 80,000,000원과 G은행에서 2018. 11. 30. 발행된 #Y 1장 100,000,000원 도합 180,000,000원의 수표는 2019. 1. 22. 피고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문서번호-AB) 및 회신

2) T 부동산은 B과 C의 각 지분 1/2이며, 2018. 11. 30. 같은 날 소외 U 의 2인에게 소유권이전함

각 1부 참조)

다.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A은 B의 누나 N의 배우자이자 B의 매형입니다.(갑 제7호증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B이 2018. 9. 20.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

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0. 2월경 원고가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가. 대법원판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B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B은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해당금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초과

B은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표2>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습니다.

<표2> 피고의 사해행위 당시('19. 1. 22)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구분	종류	내역	가액(단위:원)	비고(입증자료)
적극 재산	수표	H은행 2018. 9. 20. 발행수표 3장(#K,#Q-R)	30,000,000	갑 제2호증 3
		G은행 2018. 10. 29. 발행수표 8장(#W,#AA-X)	80,000,000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G은행 2018. 11. 30. 발행수표 1장(#Y)	100,000,000	
		수표 계	210,000,000	
	예금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0	갑 제4호증
		AC은행(계좌번호 3 생략)	10,000	갑 제8호증 1
		H은행(계좌번호 4 생략)	64,805	갑 제8호증 2
		H은행(계좌번호 5 생략)	105	갑 제8호증 3
		우체국(계좌번호 6 생략)	1,760	갑 제8호증 4
		예금 계	76,670	
	소계(①)		210,076,670	
소극	조세채무	국세	95,169,250	갑 제1호증
		지방세	9,496,400	갑 제10호증
재산	소계(②)		104,665,650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③=①-②)			105,411,020	
사해 행위	수표	H은행 2018. 9. 20. 발행수표 3장(#K,#Q-R)	30,000,000	
		G은행 2018. 10. 29. 발행수표 8장(#W,#AA-X)	80,000,000	
		G은행 2018. 11. 30. 발행수표 1장(#Y)	100,000,000	
		소계(④)	210,000,000	
	채무초과(⑤=③-④)		Δ104,588,980	

다. B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

82360 판결 등).

2) B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한 후 소 제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B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추가적인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피고 A은 B의 매형이자 B의 누나 N의 배우자로 양도로 인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인 상태에 있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을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B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채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를 위해 2021. 6. 9. B이 발행된 수표에 대하여 지급제시된 H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을 받아 해당 내용을 검토하던 중 B이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참조)

6.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B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 210,000,000원이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95,169,250원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 A과 소의 B 사이에 2019. 1. 22. 체결된 21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인 95,169,250원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95,169,25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